

시내버스 요금 부과 및 조조요금제 적용 방식 설명

Ⅰ 「일반형(초특색) 시내버스 요금」 부과방식

- 기본요금 : 요금조정표에 따라 카드·현금 각각 적용
-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요금 (단일 요금 적용노선은 제외)
 - ◆ 카드 : 성인 100원, 청소년 80원, 어린이 50원을 기준으로 추가
 - ◆ 현금 : 연령·거리별 카드요금에 “100원” 추가(연령층 모두 100원 동일 적용) 후,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조치
 - 사례) 청소년이 현금을 내고 23km 탑승 시
 - 1차 계산) 카드 1,000원(기본10km)+추가 240원(13km⇒80원×3)= 1,240원
 - 2차 계산) 카드요금 1,240원+100원 추가 = 1,340원
 - 최종 계산) 1,340원 ⇒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= 1,300원
- ※ 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금 등 조정요령」 제7조 시외버스요금 100원 단위 사사오입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 징수 편의를 위해 모든 추가요금에 대하여 적용
- ◆ 최대요금 적용
 - 단독 통행의 경우, 40km초과 시 1회만 요금 추가하고 더 이상의 추가요금은 없음
 - 환승 시에는 추가요금 제한없이 5km마다 요금부과 (최대요금 미저용)

Ⅱ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부과 산출내역 (거리비례제 기준)

(단위 : 원)

구분	추가	10 km 이내	15 km 이내	20 km 이내	25 km 이내	30 km 이내	35 km 이내	40 km 이내	40 km 초과	비고
성인	카드	100	1,250	1,350	1,450	1,550	1,650	1,750	1,850	1,950
	현금	-	1,300	1,400	1,500	1,600	1,700	1,800	1,900	2,000
청소년	카드	80	1,000	1,080	1,160	1,240	1,320	1,400	1,480	1,560
	현금	-	1,100	1,200	1,300	1,300	1,400	1,500	1,600	1,700
어린이	카드	50	630	680	730	780	830	880	930	980
	현금	-	700	800	800	900	900	1,000	1,000	1,100

■ 현금 : 카드요금 + 100원 & 최종액을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(징수편의도모)
 ■ 최대 요금 적용
 • 비환승 단독통행 : 40km초과 시, 1회 추가요금만 부과
 • 환승통행 : 40km초과하더라도 5km마다 100원씩 추가 방식 그대로 적용(최대요금 미저용)
 * 단, 환승 이용교통수단별 기본요금의 합산보다 적게 적용

요금 적용 방식 설명

기본 요금 적용